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가단143473 판결 [사해행위 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5. 24.

주 문

- (1) C이 피고 A와 맺은 <별지 목록1>에 나오는 각 증여계약 및 피고 B와 맺은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함과 아울러, (2)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2억 6,900만원, ② 피고 B은 1억 5,300만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관근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채납자 C(이하 "C"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피고1 A는 피고의 배우자이고, 피고2 B는 피고의 자녀입니다.

다. 피고들은 C로부터 별지목록1,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증여받은 사람들입니다.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잠실세무서장(이하 "원고"라 합니다)은 C이 2018.9.7. 서울특별시 송파구 D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2018.11.30. 신고한 양도소득세 1건 396,045,095원을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였으며 C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아래 표1(☞ C의 2022.10.21. 현재 국세채납액)과 같이 채납액이 있으며, 증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위: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채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잠실	양도소득세	2019.1.31.	504,650,170원	2018년	2018.9.30.
채납액 합계			504,650,170원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597 판결 참조)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은 2018.7.20.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 국세 채권 발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매매계약이 완결될 고도

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계약이 완결되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현실화 되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해행위가 국세 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인 2018.7.25부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세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양도 및 양도대금 수취

C은 서울 송파구 D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계약일을 2018.7.20(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이라 합니다), 중도금 납부일을 2018.8.8, 잔금 납부일을 2018.9.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 250백만원, 440백만원, 445백만원의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계약금과 잔금은 전액 수표로 수취하였고 중도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취하였습니다.

나. 사해행위

C은 아래 표2과 같이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수표로 수취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인 249백만원과 잔금 일부인 133백만원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또한 C은 E은행 계좌에 중도금으로 수취한 440백만원 중 250백만원은 본인의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 출금하거나 수표로 발행하여 소비하였는데 특히 수표발행금액 중 40백만원은 피고2가 수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고들은 C에게 현금을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부동산 매수인이 발행한 수표와 C이 발행한 수표로 수취한 422백만원은 모두 증여받은 것입니다. 또한 증여 시점은 수표의 정확한 배서 시점을 알 수 없는 바 피고들이 수표를 수취하여 이를 현금화한 후 피고들의 계좌로 입금한 시점¹⁾을 증여받은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표 2 : 부동산 매매대금 수표 수령내역>

1) 중도금 관련 수표의 경우 B이 현금화하여 F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

(단위:원)

구분	발행은행	수표번호	발행금액	수령인	발행일	지급일자
계약금 날짜: '18.7.20. 금액: 250백만원	G은행 잠실	H	189,000,000	A	18-07-19	18-07-25
	I은행	J	60,000,000	A	18-07-20	18-07-26
중도금 ²⁾ 날짜: '18.8.8. 금액: 440백만원	E은행 잠실본동	K	10,000,000	B	18-08-23	18-08-30
		L	10,000,000	B		18-08-30
		M	10,000,000	B		18-08-30
		N	10,000,000	B		18-08-30
잔금 날짜: '18.9.7. 금액: 445백만원	G은행 잠실	O	10,000,000	B	18-09-07	18-10-01
		P	10,000,000	B		18-10-01
		Q	1,000,000	B		18-10-01
		R	1,000,000	B		18-10-01
		S	1,000,000	B		18-10-01
		T	10,000,000	B		18-10-15
		U	10,000,000	B		18-10-15
		V	10,000,000	B		18-11-01
		W	10,000,000	B		18-11-01
		X	10,000,000	B		18-11-02
		Y	10,000,000	B		18-11-02
		Z	10,000,000	B		18-11-02
		AA	10,000,000	A		18-11-08
		AB	10,000,000	A		18-11-08
		AC	10,000,000	A ³⁾		18-11-09
		AD	10,000,000	A ⁴⁾		18-11-09
계			422,000,000			

다. 사해행위 당시의 C의 채무초과 상태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 C는 2018.8.8. 매도인으로부터 중도금으로 440백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후 2018.8.23. 발행가 10백만원 수표 7장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4장을 B에게 증여하였습니다. B는 해당 수표를 2018.8.30. 현금화하여 F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금융조회내역(중도금관련)).

3) A는 해당 수표를 2018.11.9. 현금화하여 B의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수증한 자는 B입니다(갑 제9호증 금융조회내역(매수인발행수표)).

4) 각주4와 동일합니다.

2002.9.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3다33874 판결)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사해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C이 부동산 계약금으로 수취한 수표를 피고1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최초 증여"라 합니다.)한 시기는 피고1이 현금화하여 본인계좌로 수령한 시점으로 판단되는데, 피고1은 C로부터 수취한 189백만원, 60백만원의 수표를 각각 2018.7.25, 2018.7.26로 다른 날짜에 현금화하였기에 원칙적으로는 각 현금화한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현금화 행위가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C은 피고에게 증여하려는 통일된 의사로 수표를 각 증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각 증여계약은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249,000,000원을 증여한 하나의 행위로 보아 판단하면, C이 피고1에게 249,000,000원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아래 표3과 같이 238,408,476원으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 부동산 계약금 일부인 249,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C은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로 부동산 중도금 채권 중 일부인 250백만원으로 은행 대출 채무에 상환하는 등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동일 금액이 동시에 감소되는 변동이 있을 뿐,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면제 받은 사실이 없고, 사해행위로 인한 적극재산의 감소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C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초 증여 이후에는 각 증여시점 별로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표 3> 사해행위 당시(2018.7.25)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원)

구분		세부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 재산	부동산	경상북도 고령군 AE	20,260,080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456원 × 44,430㎡
		경상북도 고령군 AF	18,798,000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15,600원 × 1,205㎡
	부동산 관련 채권	계약금	250,000,000	갑 제5호증
		중도금	440,000,000	갑 제5호증
		잔금	445,000,000	계약시 인수하기로 한 채무 등 을 제외한 실수령액 갑 제5호증
	소계		1,174,058,080	
소극 재산	국세채납	양도소득세(신고세액)	396,045,095	갑 제3호증
	지방세채 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분)	39,604,509	양도소득세의 10%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
	은행대출	E은행	250,000,000	부동산 매수인이 미인수한 채무임. 18.8.8 중도금 수표로 변제함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사인채무	채권자 AG	250,000,000	18.11.19~18.11.22 잔금 수표로 변제한 금액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소계		935,649,604	
	합 계		238,408,476	

라. 맺음말

C은 본인에게 과세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압류 등 채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인 피고1과 자녀인 피고2에게 각각 269,000,000원, 153,000,000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손해의 의사

C은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납세고지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C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피고들의 악의 추정

피고들은 각각 C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C에게 국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반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

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2018.7.25.이므로 본소 제기는 사해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악의를 안 것은 서울지방법국세청 채납전담부서에서 금융거래조사를 하면서 현금 증여 사실을 알게 된 2021.10.26. 이후이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7.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채납자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 504,650,170원은 C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 합계 422,000,000원보다 크므로 원고는 C이 증여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자 하며 피고1, 피고2 각각에게는 별지목록1 기재 각 증여계약, 별지목록2 기재 각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합니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납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원은 피고들 명의 계좌에 혼입되어 다른 예금채권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이미 피고가 사용 소비함에 따라 현실적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8. 결 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1은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피고2는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증여 금액에 해당하는 15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의무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

<별지 목록1>

1. 2018.7.25. 체결된 189,000,000원의 증여계약
2. 2018.7.26. 체결된 60,000,000원의 증여계약
3. 2018.11.8.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합계 269,000,000원.

<별지 목록2>

1. 2018.8.30.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 2018.10.1. 체결된 23,000,000원의 증여계약
3. 2018.10.15.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4. 2018.11.1.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5. 2018.11.2.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6. 2018.11.9. 체결된 20,000,000원의 증여계약

합계 153,000,000원. -끝-

